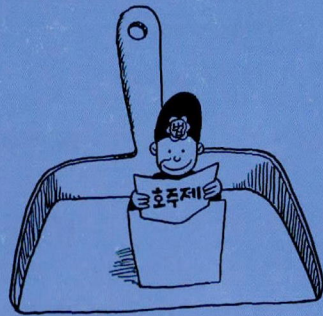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전화 (02)2273-5442 / 팩스 (02) 2273-9539 / E-mail: no-hoju@women21.or.kr

호주제 불만 및 피해사례 전국신고전화

[서울]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02)747-2442/서울여성의전화 강서양천지회(02)2605-8455/서울남서여성민우회(02)2643-5016/서울동북여성민우회(02)3492-7140/서울여성의전화(02)2272-2161/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02)529-6349/한국성폭력상담소(02)576-5513/한국여성민우회(02)739-8858/한국여성연구소(02)2273-6206/한국여성의전화연합(02)2269-2962/한국여성학자협의회(02)2264-8275 [인천 경기] 강화여성의전화(032)934-1903/경기여성단체연합(031)387-6975/고양여성민우회(031)919-1195/광명여성의전화(02)2614-7370/군포여성민우회(031)396-0201/김포여성민우회(031)986-6007/새움터(031)867-4655/성남여성의전화(031)751-2050/수원여성의전화(031)232-7780/수원여성회(031)241-7531/시흥여성의전화(032)312-4700/안양여성의전화(031)458-4385/안양여성회(031)387-3050/인천여성의전화(032)527-0090 [대구 경북]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053)475-8084/대구여성의전화(053)475-8086/대구여성회(053)421-6758/포항여성회(054)282-1470/함께하는주부모임(053)426-0040 [부산 울산 경남] 경남여성회(055)282-9603/김해여성의전화(055)327-6447/부산성폭력상담소(051)513-2475/부산여성단체연합(051)817-4322/부산여성의전화(051)817-4321/부산여성회(051)557-4214/울산여성의전화(052)244-1555/진주여성민우회(055)743-0410/창원여성의전화(055)266-3722 [전북] 군산여성의전화(063)445-2286/성폭력예방치료센터(063)283-9647/익산여성의전화(063)857-8163/전북여성단체연합(063)287-3459/전주여성의전화(063)287-7324 [광주 전남] 광주여성의전화(062)363-7739/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062)225-6078/영광여성의전화(061)353-4994 [충청] 천안여성의전화(041)574-0505/청주여성의전화(043)252-0966/충북여성민우회(043)263-8124 [강원] 강릉여성의전화(033)652-1985/원주여성민우회(033)744-4117/춘천여성민우회(033)255-5557 [제주] 제주여민회(064)744-2193

발행일: 2002. 9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그림·사진: 반쪽이 최정현, 이종근 한겨레신문 기자 제공

참조문헌: 한국여성개발원,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96)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I·II(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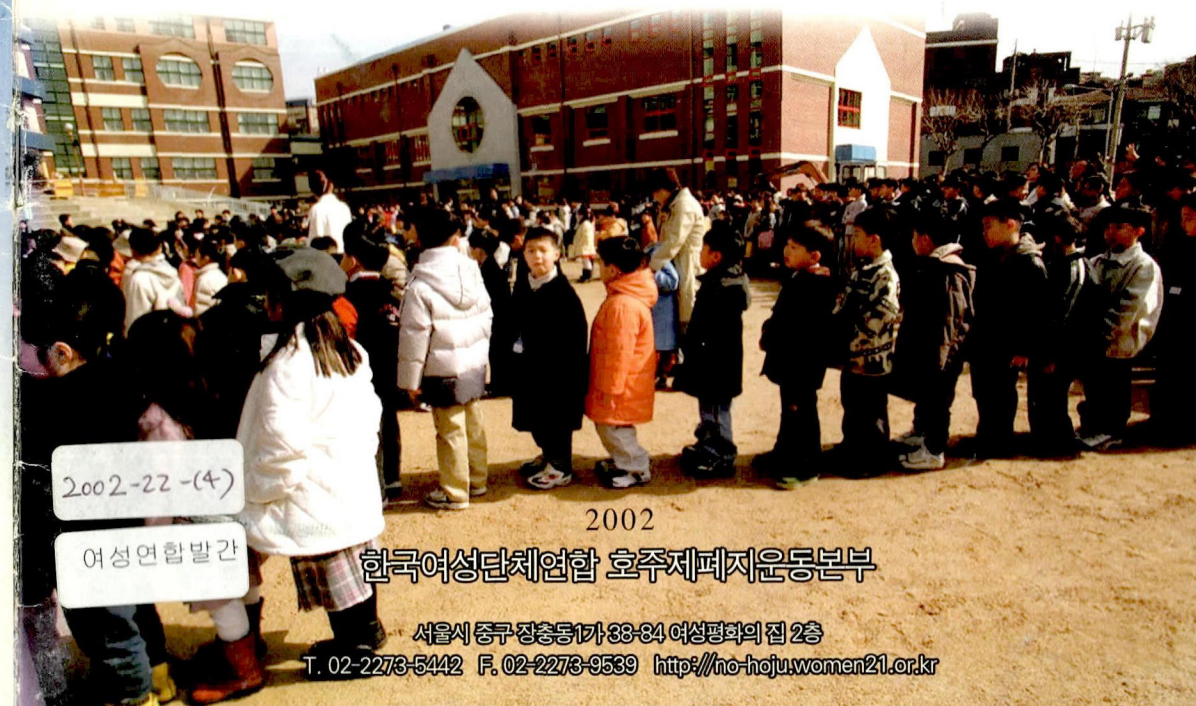
21C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2002)

편집디자인: 그래픽 시선(02-732-7902)

본 자료집은 여성부의 후원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으로 가는 길



2002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2층

T. 02-2273-5442 F. 02-2273-9539 http://no-hoju.women21.or.kr

소책자를 발간하며

어린 조카 녀석에게 “엄마는 강 진주인데 넌 왜 아빠 성만 따라서 ‘이 누리’ 라고 부르니? ‘강 누리’ 로 하지 않을까?” 라고 물었더니, 한참 고민을 하더니 “난 원래 아빠 아들이라 그래요. 성 안 바뀌요.” 하는 것이었다.

누리는 벌써 호주제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처럼 현행 호주제도에서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한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그 자녀가 엄마와 함께 산다해도 아버지 호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혼·재혼한 엄마와 함께 살아도 엄마와 호적에 함께 할 수 없고 더 더군다나 성씨는 바꿀 수가 없다. 즉 부부의 혼인이 취소될 경우, 자녀들은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자녀들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호주제도의 실체이다.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방식·성씨제도”라는 가면을 쓰고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여성차별을 구조화시켜온 장본인인 셈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여성의 지위는 영유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 등 꾸준한 법·제도 개선운동으로 향상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남녀차별적인 법·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족법상의 호주제도와 같은 뿌리깊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도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차별과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호주제도는 3차례의 가족법 개정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남성중심적 의식과 남녀차별적 행위를 당연시하는 풍조를 생산해내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남녀차별을 온존시키는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봉건적 의식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호주제도는 21세기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가족문화 형성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실질적인 남녀평등과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가부장제 의식 및 관행의 뿌리인 호주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전력을 기울여 활동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이 소책자는 호주제의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04 호주제도와 호적

05 호주제로 인한 불만사례

06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09 호주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11 외국의 신분증명제와 성씨제도

12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14 여성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의 활동내용 및 향후 계획

15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소개

2002. 9.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 호주제도와 호적

- ▶ 호주제도가 민법상 '호주'를 중심으로 家를 규정하는 제도라면, 호적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이라는 신분등록부에 국민 각 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하는 제도이다.
- ▶ 현행 호적법은 시·읍·면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고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家별로 편제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의 호적에 기록된 호주와 가족의 집합체야말로 '가족'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이처럼 기록되지 않는 이혼가족, 한부모가족, 사실혼 가족과 그 자녀를 차별하는 의식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호적이라는 존재가 가족관념에 주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으며, 민법상의 호주제도를 존립하게 하고 있다.
- ▶ 호주제의 폐지가 호적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호주제도의 존폐와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필요하고,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호적의 편제기준과 편제범위를 새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부부동적·친자동적의 원칙이 민법상 가족의 구성원리로 채택되어 그것이 호적의 편제기준으로 되고 있지만, 가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이를 호적의 편제원리로 호적법에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호적편제방법에 관한 아주 기술적인 문제인 것이다.
- ▶ 다만, 호주와 호적이라는 명칭은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호주제도 : 법적으로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서,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호적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증

● 호주제로 인한 불만사례

아래의 사례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 불만신고전화를 통해 접수된 내용으로써 호주제로 인해 여성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피해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혼·재혼여성이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갖고도 자녀와 한 호적에 있을 수 없는 경우

- 1 남편의 여자관계때문에 이혼을 하고 현재 고3, 고2 아이들 2명을 키우고 있다. 전 남편은 연락이 없다가 3년전 느닷없이 연락을 해서는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데려가겠다고 한다. 전 남편은 전과가 많은데다가 죄를 짓고 도망 다니면서 다른 여자랑 살고 있는데 아이들을 데려가면 어떻게 키울 것인지, 아이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부모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뜸 나타나서 이런 행태를 저지르는 것은 아이들의 호적이 자신한테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전남편 호적에서 내 호적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 2 전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고 재혼해서 아이를 1명 낳았다. 현재 남편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호적에 올리고 성도 변경하고 싶어하지만 현재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한다. 주민등록상에도 그 아이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 필요하다면 아이의 성씨도 변경하고 양육하는 사람의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현행법이 바뀌어야 한다.

☞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문화로 인한 불만사례

- 1 나는 시댁의 만머느리다.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장남이 다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친정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시댁에 제사가 있으면 갈 수 없다. 시댁제사는 1년에 평균 7번 정도 지낸다. 일이 많고, 돈이 많이 들어 힘든 것은 아니다. 다만 만머느리이기 때문에 친정에서는 만딸인데도 불구하고 명절 때 친정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댁에 제사가 있으면 친정아버지 생신과 집안행사에도 갈 수 없었다. 내 딸 아이가 나와 같은 처지로 살게 된다면 누가 딸을 낳으려고 하겠는가? 호주제 때문에 남성중심의 문화가 계속되는 것 같다. 아들도 귀하면 딸도 귀한 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2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딸이 하나 있는데, 남편도 아들 낳기를 원하고 있다. 나이 들기 전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남편한테 괜히 미안하고, 남편은 아들을 둔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가려 하지 않는다.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아들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척 구박을 당했는데, 지금은 몸이 늙고 아파서 내가 간호를 해주니까 이제서야 잘 대해준다. 우리 둘다 가부장제 문화의 피해자이다.
- 3 결혼 초에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보니 전 호적에서는 내 이름이 제적되어 있고, 대신 남편이 나의 호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무척 기분이 상했던 기억이 난다.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결혼을 했는데, 왜 남편이 나의 법적 주인(호주)이 되어야 하는지, 아이들은 왜 무조건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하는지, 이런 비합리적인 제도를 법으로 강제해놓았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3살 손자가 60세 할머니의 호주?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3살짜리 손자가 60세가 넘는 할머니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인 어머니의 호주가 되는 등 현실의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다. 물론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 이혼(또는 재혼)한 엄마랑 같이 사는 데 주민등록에는 '동거인'?

-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알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 781조).
-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826조 3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은 혼인하여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父家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냄으로써 母家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혼·재혼여성에게는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혼시 여성은 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 1호적을 창설할 수 있지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성씨·본적·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자녀가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고 주민등록에는 자녀가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피해가 많다. 이 때문에 재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탈법적인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혼·재혼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부가우선입적원칙은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을 낳을 뿐 아니라, 이혼·재혼·홀부모·미혼부모 가구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남편의 혼외 자는 남편 맘대로. 처의 혼외 자도 남편 맘대로!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민법 제784조).

남편은 처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키는데 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처는 남편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 자녀(제혼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외도로 낳은 자녀 등)를 입적시키는데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호적의 주인이 '호주'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써, 호적이 남편의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家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는 부부평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호적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 아들바란 부모세대, 짝궁없는 우리 세대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호적편제방식·성씨제도는 법적으로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으므로 한 집안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겨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낙태를 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14세이하의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2명(통계청 2000, 정상성비 105~106)이라는 매우 기형적인 성비불균형 현상을 낳고 있으며, 이 아이들이 결혼적령기에 접어드는 10년 후부터는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되고 있다. 초등학교에 가보면 여자짝궁이 없어 남자 아이들끼리 앉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성감별에 의한 여아낙태는 남녀가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근본을 부정하는 일이며,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풍조를 만들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국제사회가 비웃는 성차별적 제도

호주제도는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우선입적주의 등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됨과 동시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 1999년 11월 UN인권이사회에서는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중략)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권고사항을 결의한 바 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놓은 나라는 없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이고 열린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가족편제방식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핵심 열쇠가 호주제 폐지에 있다.

호주제도의 역사

| 고려시대 |

- 호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형제, 조카, 며느리, 사위 등 동거하는 친족과 노비에 관한 사항까지 기록하여 사회적 신분을 밝히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현실생활의 거주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했을 때는 최연장자인 그 배우자(여성)가 대표자가 됨으로써 아들이 우선적으로 호주를 승계하지 않았다. 기혼인 딸도 그대로 친가 호적에 남아있었고, 딸 아들 구별없이 돌아가면서 부모를 부양하고 제사를 모시는 풍습이 있었기에 호주권이나 제사권의 승계관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재산상속도 균분으로 이루어졌다.

| 조선시대 |

- 고려의 호적제도를 기본적으로 계수하면서 조선 중기에 경국대전으로 확립되었으나, 현실의 거주관계에 있는 사람을 함께 기재하는 원칙과 남편 사망시 그 아내가 호주가 되는 것 등 고려의 호적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적장자에 의한 제사상속과 이를 통한 가계계승관념이 확립되면서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장자우대·여성차별의 경향이 굳어지게 되었으나, 호주권 상속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 일제시대 이후 |

- 1909년, 민적법 제정 : 현행 호적제도의 뿌리가 된 민적법에는 실제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관념적인 家를 편제단위로 하여 개인의 친족적 신분관계를 기재하고, 호주가 家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다.
- 1910년, 관습조사보고서 : “조선에는 제사상속·호주상속·재산상속 등 3종류의 상속형태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호주권의 승계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일제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식민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다.
- 1921년, 조선호적령 제정 : 호적제도가 완전히 일본식으로 변경되었다.
- 1960년, 호적법 제정 : 새로 제정된 민법규정에 맞추기 위해 다소 변경되었지만 이전의 것(조선호적령)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호주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호주제도가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이고,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호주제폐지를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오해인가?

▶ **오해** 호주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우리 고유의 전통제도이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 **진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전통에는 호주제도가 없었으며, 설혹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때문에 호주제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전통은 무조건 계승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것은 일제가 국민통제수단으로 만든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일제는 국가를 하나의 큰 가족으로 보고 천황을 국가라는 가족의 가장으로 상징하였으며, 대중에 대해서는 한 집안의 가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듯이 천황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다.

고려, 조선중기를 거칠 때까지도 호의 대표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여성)가 호주가 되는 등 현재와 같은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나 제사승계의 관습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조선 후기를 거치면서 성리학의 영향으로 인해 가계계승·제사상속시 남녀 차별 경향이 굳어졌으나, 호주권 상속의 관습은 여전히 없었다. 호주제는 원래 일본 무사계급의 가독상속제(적장자가 그 집의 가산과 호주권을 독점적으로 상속하는 제도)가 조선에 강제적으로 이식된 것이며, 그 후 일제의 동화정책과 식민지 통치의 효과적으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호주제를 만들었던 일본조차 남녀평등과 인간존엄, 부부간의 평등에 어긋난다 하여 1947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폐지한 반면, 해방 후에도 한국은 일본 식민잔재인 호주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 **오해** 호주제가 폐지되면 어른 공경의 전통 미풍양속이 사라진다.

▶ **진실** 현행 호주제는 호주가 사망하면 나이가 많더라도 여자는 호주승계순위에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서너살 짜리 손자가 할머니의 호주가 될 수 있다. 남성위주로 호주가 되는 것이 전통미풍양속인가? 오히려 나이 어린 아들이나 손자가 호주가 됨으로써 가족질서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전통미풍양속에도 어긋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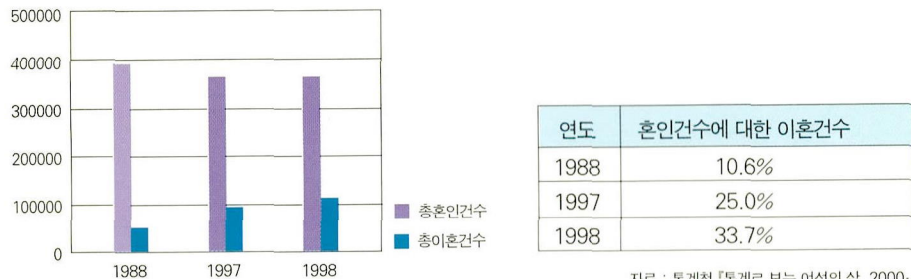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어른 공경의 효 사상은 교육이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뒤집어서 호주제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 왜 이렇게 어른공경사상이 희박해졌는가? 이는 오히려 권위만을 내세우는 호주제도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성평등적 사고방식과 배치됨으로 나타나는 역효과이며, 어른 공경의 미풍양속은 민주적이고 열린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 오해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호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위계질서가 파괴됨으로써 가족의 구심력이 손상되어 가족해체를 불러 올 것이다.

▶ 진실 어느 사회에서 가족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손쉬운 예로서 이혼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호주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다가 이미 폐지한 일본(호주제)이나 스위스(가장제)보다 한국의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호주제도의 존재가 가정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사회현실과 괴리된 낡은 가족제도가 오히려 가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의식, 경제적 능력이 훨씬 나아진 현실 속에서, 일방의 희생에 바탕으로 하여 가족이 유지되기는 점점 힘들어 질 것이다.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에게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호주제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장 폐지·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총혼인건수, 총이혼건수〉



자료 :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0」

▶ 오해 부모성을 같이 쓰기 시작하면 후대 자손들의 성씨가 무제한적으로 많아지므로 이는 비현실적인 운동이다.

▶ 진실 '부모성 같이쓰기' 운동은 우리들이 아버지의 성만 따를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자녀의 성을 정할 때 부부가 합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문화운동

이다. 이는 곧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호주제도의 핵심적 여성차별조항인 성씨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이것을 호주제폐지 이후 성씨의 대안으로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



● 외국의 신분증명제와 성씨제도

한국의 호주제도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남녀차별적인 신분증명제도이다. 그럼 과연 외국의 신분증명제도와 성씨제도는 어떠한가? 외국사례를 통해 양성평등한 신분증명제도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 일본 : 부부를 중심으로 한 신분증명제도

일본은 전쟁 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다. 즉,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하나의 성씨를 쓰고(부부동성제도),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가진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한다. 그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호적을 새로 편제한다.

그러나 일본호적은 90% 이상의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름으로써 발생하는 실질적 여성차별문제,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표시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문제, 가족집단이 한 용지에 일괄하여 기록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정보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개인별 호적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 중국 : 호구제도

중국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전원을 호구부 1책에 정리한다. 호구부는 가구(세대)주와 그 가족별로 항을 나누고 있지만,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은 가구주와의 관계 1란 밖에 두고 있지 않고, 각 사람의 부모성명을 기록하는 항목은 없다.

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등기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고,父 또는 母의 성, 그리고 다른 성을 칭할 수도 있다.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한국의 호주제도가 아무런 생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또한 부부간의 평등권을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부부동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즉 부부는 동적하지 않고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호구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 서구유럽 : 1인1적제와 부부공동가장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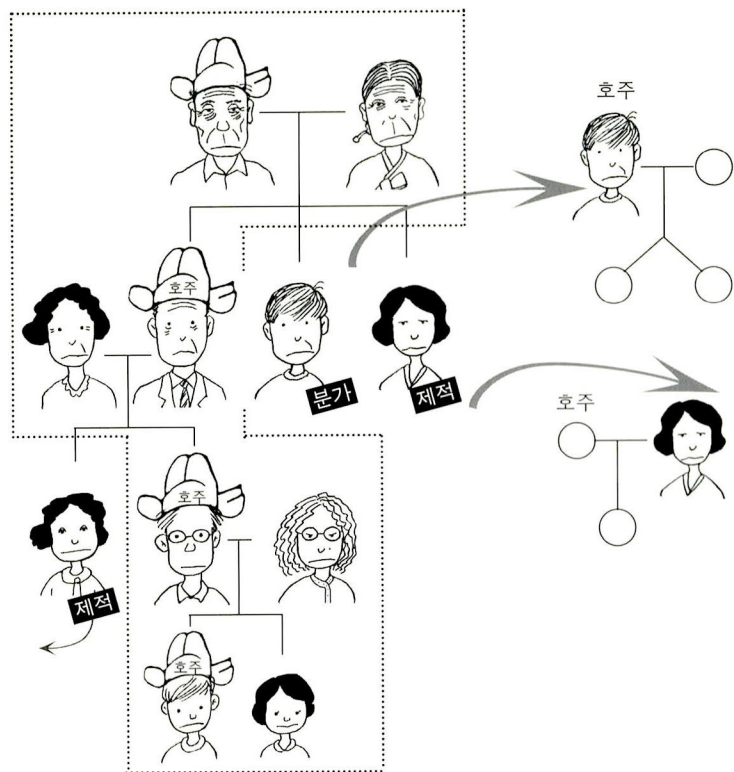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유럽은 개인별로 호적을 갖는 1인 1적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출생, 혼인, 출산, 사망 등의 개인 기록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그 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을 한 용지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친족관계도 나타나지 않는다.

스위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민법에 부부는 부부공동체 및 자녀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둬으로써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녀의 성씨에 있어서도 부 또는 모의 성, 그리고 다른 성(姓)을 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독일은 부모 양친의 성을 공통으로 쓸 수 있고, 스웨덴의 경우 부모 협의 하에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으나 3개월 이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어머니의 성으로 신고가 된다.

● 호주제폐지 이후의 대안

여기서는 현행 우리 호적의 모습을 살펴보고 주로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호주제의 폐지는 곧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만들어 내는 일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현행 우리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는 이후 충분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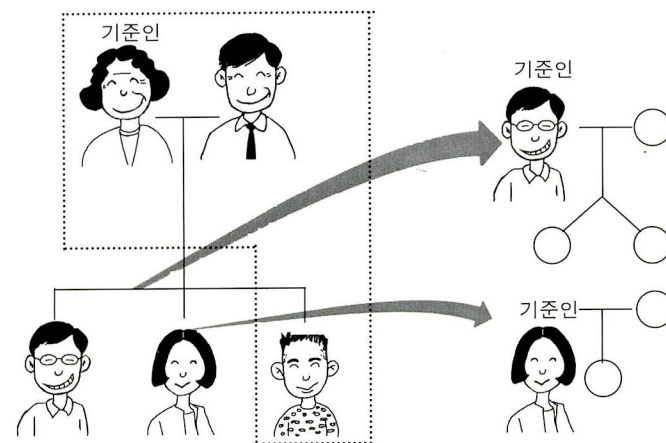
〈현행 호적의 모습〉

그림은 실제 거주관계와 상관없이 호주와 장남을 중심으로 4대가 한 家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우리 호적의 모습이다.

아무런 근거없이 장남을 우선하여 호주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딸은 혼인을 하면 기존 호적에서 '제적'되어 새로운 호적에 '입적'된다. 즉 여성은 평생을 아버지, 남편, 아들의 호적에 입적·제적을 반복하면서 가족 내에서 열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런 폐해를 없앨 수 있는 대안적 호적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첫번째가 부부와 미혼자녀 중심으로 호적을 구성하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고 나머지 하나가 개개인이 자신의 호적을 갖는 1인 1적 방식이다.

▶ 기본 가족별 편제 방식



기본가족별 편제 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것이다. 자녀는 혼인하면 분가하여 새로운 가족부(현재의 '호적')를 만들고, 가족부 검색을 위해 호주 대신 '기준인'을 지정하되, 기준인은 부부가 협의하여 부부 중 1인으로 정한다.

부부가 이혼하면 각각 새로운 가족부를 만들고,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부를 다시 만든다. 이혼시 미혼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남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친권자가 속한 가족부에 기록함으로써, 실제로 동거하는 가족의 모습을 반영하게 된다. 자녀의 성과 본은 부부가 협의하여父 또는 母의 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 1인 1적제

개인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것이다. 즉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 사항을 '나'를 중심으로 기재하게 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등도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 가족별 편제 방식이 갖는 단점이 해결되고, 가족중심에서 개인단위로 진행중인 우리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성씨는 어떻게 할까?

현재 자녀의 성씨는 아버지의 성을 이는 한에는 반드시 父의 성을 따르도록 한 강제조항을 없애고, 자녀 출생시 부부간의 합의 하에 부 또는 母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혼·재혼가정에서 가족 간에 성씨가 달라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녀의 성씨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여성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는...

호주제폐지를 위한 그간의 주요 활동

- 1997년 3월 9일 부모성 함께쓰기 선언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 1999년 4월 26일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여한의사회, 호주제폐지를 위한시민의모임 주최)
- 1999년 6월 호주제폐지운동을 여성연합의 99년 주요사업으로 설정
- 1999년 7월~12월 전국 50여 단체에서 '호주제 불만 및 피해사례 신고전화' 운영
전국 5개 지부 및 28개 회원단체에서 각종 문화캠페인, 서명운동 전개
- 2000년 1월 호주제폐지운동을 여성연합의 2000년 중점사업으로 설정 (제14차 정기총회에서)
- 2000년 6월~10월 전국 50여 단체에서 '호주제 불만 및 피해사례 신고전화' 운영
전국 5개 지부 및 28개 회원단체에서 각종 문화캠페인, 서명운동 전개
- 2000년 7월~8월 호주제 위헌소송을 위한 원고인단 모집
- 2000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2000년 국정감사 모니터를 위해 호주제폐지에 대한 정책과제 제출
- 2000년 9월 22일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113개 단체) 발족 및 호주제폐지를 위한 국회청원
- 2000년 9.25~29 호주제폐지를 위한 집중서명운동주간 선포 및 거리 서명전(여성연합 주최, 서울지역 11개 단체 주관, 명동 한빛은행 앞)
- 2000년 11월 1차 호주제 위헌소송 제기(호주제폐지시민연대)
- 2001년 4월 가정법원의 위헌심판제청 결정
- 2001년 5월 UN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호주제' 우려 표명
- 2001년 7월 딸사랑·아들사랑 문화 한마당 개최
- 2001년 7월 방송인 백지연, 최병모 변호사 평등가족 홍보대사 위촉
- 2002년 5월 제2차 호주제 위헌소송 제기
- 2002년 9월 탤런트 권해효, 개그우먼 김미화 평등가족 홍보대사 위촉
- 2002년 9월~10월 호주제폐지 평등가족 만들기 전국순회 캠페인 개최(10개 지역)
- 2002년 10월 21C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지원(평등사랑변화사모임, 국회인권정책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화사모임 공동주최)

호주제 폐지를 위해 앞으로 이런일을 합니다

- 호주제폐지 범국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
- 사이버 호주제폐지 운동 (<http://no-hoju.women21.or.kr>)
- 호주제 피해 및 불만전화 접수
- 민법 개정청원

나도 호주제 폐지운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전화(02-2273-5442)를 주시면 서명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서명도 가능합니다. <http://no-hoju.women21.or.kr>
- 가족과 가까운 친지, 이웃에게 호주제의 문제점을 알립니다.
전화주시면 홍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 언론사에 독자투고 등을 통해 호주제폐지의 당위성을 제안합니다.
- 호주제 뱃지도 판매중입니다. 서명운동할 때 동참하시는 분들께 나눠주세요.
- 1세트(2종) : 1,000원 (20세트만 구입하시면, 우송해드립니다)
- 시간 없으신 분들은, 후원계좌를 통해 정성을 모아 주세요.
- **우리는행** 064-182272-01-001 **예금주 지은희 호주제폐지**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 발족배경

- 가부장적 호주제도 폐지로 시민사회 내 여성의 공적영역에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 한국 특유의 가족주의가 21세기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가족문화 형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극복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해야 한다.
- 이혼·재혼·사실혼 가족의 여성과 그 자녀들이 호주제도로 인해 피해받고 있으므로 아동과 여성의 인권 보호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 한다.

▶ 발족일

2000년 9월 22일

▶ 참여단체

경실련, 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여한의사회,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화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천리안 여성학동호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가정법률상담소(29지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5지부·28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42회원단체·16협동회원), 환경운동연합,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총 113단체)

▶ 간사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 호주제 위헌소송 담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사업내용

- 호주제 위헌소송
- 호주제폐지 범국민 서명운동
-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청원

